

슬레이트 처리·지붕개량지원 사업 공고

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·처리토록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슬레이트 처리·지붕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30일

예 천 군



1. 법적근거 :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, 제26조
2. 지원사업 : 슬레이트 처리·지붕개량지원 사업
3. 사 업 비 : 652,800천원
4. 추진방법 : 한국환경공단 위탁
5. 지원한도 : 슬레이트 처리 3,360천원(위탁수수료 포함)
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5,000천원(위탁수수료 포함)

6. 지원기준

가. 지원대상자[슬레이트 처리]

-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·처리
 - 주택을 제외한 공장, 축사,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
 -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, 지붕개량등 지원 불가
-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

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.

나. 지원대상자[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]

-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·지붕개량
 -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
 - 건축신고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
 -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
 - 텐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
 - 동일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, 환경개선부담금,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.

다. 우선지원 순위[슬레이트 처리]

-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
-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
- 슬레이트 지붕 처리·개량사업
-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
- 빈집정비사업

라. 우선지원 순위[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]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- 한센인 정착촌
- 75세 이상 노인가구, 3자녀 이상 가구,

- 실질적 사회취약계층(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%이하 가구 포함)
읍면장 확인으로 같음
- 문화재, 명승지 내 또는 경계로부터 100m이내 가구

7. 신청서류

가. 슬레이트 처리·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: 읍·면사무소에 비치

- 구비서류
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1부.
-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.
- 건축물 대장등본 1부 등

8.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

가. 접 수 처 :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

나. 접수기간 : 2015. 2. 2(월) ~ 2. 28(토)

다. 선정방법 :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평가

라. 결과통보 : 개별통지

붙 임 :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. 끝.

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현황	성 명	(생년월일 : 19 년 월 일)		
	소재지			
	연락처 (h.p)			
건축물 현황	건축연도		슬레이트 면적 (㎡)	
	건축물대장 등재여부	등 재 ☐ 미등재 ☐ (과세대장 ☐ , 기타 ☐)	거주유무	거주 ☐ , 빈집 ☐
	보관슬레이트 유무	유 ☐ , 무 ☐	건축면적(㎡)	
	지붕철거후 계 획	지붕개량연계 ☐ , 주택개량연계 ☐ , 빈집정비연계 ☐ , 건축물 자진철거 ☐ , 자체지붕개량 ☐ , 자체주택개량 ☐		
신청유형	취약계층 ☐ , 주거급여대상 ☐ ,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☐ , 농어촌주택개량 ☐ , 빈집정비사업 ☐			
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. 2015 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예천군수 귀하				
첨부서류	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			

지방세 및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: 확인자 (인)

※ 슬레이트 면적(㎡) = 건축면적(㎡) × 1.45(건축물면적의 배수) × 1.16(슬레이트겹침비율)

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

성 명

소재지

위치도

사진현황

슬레이트 처리지원 동의서

☐ 건축물 소재지 :

☐ 이행조건

- 슬레이트 철거·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
 - 사업비 지원 상한액 (위탁수수료 포함) : 336만원
- 슬레이트 철거·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, 지붕개량,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
-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
-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

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
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☐ 건축물 소유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☐ 토지 소유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☐ 현재거주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예 천 군 수 귀하

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

신청자 현황	성 명	(생년월일 : 19 년 월 일)		
	소재지			
	연락처 (h.p)			
건축물 현황	건축연도		슬레이트 면적 (㎡)	
	건축물 소유자		건축물소유권확인	건축물대장 ☐ 등기부등본 ☐ 과세대장 ☐ 자가가구확인 ☐
	건축물대장 등재여부	등재 ☐ , 미등재 ☐	건축면적(㎡)	
	거주인원	명	보관슬레이트유무	유 ☐ , 무 ☐
가구유형	기초 ☐ , 차상위 ☐ , 장애인 ☐ , 국가유공자 ☐ , 한부모가정 ☐ , 결혼이민자 ☐ , 한센인 ☐ , 노인가구 ☐ , 다자녀가구 ☐ , 읍면장인정 ☐ , 문화재주변 ☐			
위와 같이 슬레이트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 2015 . . .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예천군수 귀하				
첨부서류	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			

지방세 및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: 확인자 (인)

기초생활수급 대상등 취약계층 자격 확인필 : 확인자 (인)

※ 슬레이트 면적(㎡) = 건축면적(㎡) × 1.45(건축물면적의 배수) × 1.16(슬레이트겹침비율)

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

성 명

소재지

위치도

사진현황

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

☐ 건축물 소재지 :

☐ 이행조건
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각각 최대지원액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 의무 이행(위탁수수료 포함)
 - 슬레이트 처리 최대지원액 336만원, 지붕개량 최대지원액 500만원
-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지붕은 본인 직접철거·처리후 사업시행
-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
- 텐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
-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, 벽체 등의 수선 및 기타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
-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

상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이행조건 이행 및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☐ 건축물 소유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☐ 토지 소유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☐ 현재거주자

- 주 소 : (연 락 처 :)
- 성 명 : (인) (생년월일 :)

예 천 군 수 귀하